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66조제6항제11호에 따른 어업·양식업용 폐합성수지를
수집·운반하는 자

제10조에 제10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5. 별표7 제5호가목2)라)(1)에 따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 등 재사용 제품의 제조에 재활용하는 경우

제15조의2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어업·양식업용 폐합성수지(어업·양식업 활동 과정에서 생활
폐기물로 배출되는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
자 및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2의 표제
4호에 따른 어망 및 같은표 제5호에 따른 로프 등을 말한다. 이
하 같다)

제1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행계약”을 “대행계약(법 제1
4조의6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5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4조의6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의6부터 제15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6(계약금액의 조정)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대행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조정계획을 해당 계약을 체결한 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을 체결한 특정 품목의 처리비용(계약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리비용을 합산한 비용을 말한다)이 입찰일(종전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일로 한다. 이하 같다) 당시의 처리비용보다 100분의30 이상 증가한 경우
2. 대행계약을 체결한 특정 품목의 매각단가(계약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각단가를 합산한 단가를 말한다)가 입찰일 당시의 매각단가보다 100분의30 이상 감소한 경우

3. 대행계약을 체결한 특정 품목의 물량(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말한다)이 입찰일 당시의 물량보다 100분의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4. 대행계약의 영업 구역 내 세대 수가 입찰일 당시의 세대 수보다 100분의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5. 그 밖에 재활용시장의 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정계획을 통지받은 대행자는 그 조정계획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대행자는 재활용 시장의 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14서식의 계약금액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계약 품목의 처리비용 및 매각단가의 변동상황,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금액의 산정 및 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의7(대행계약 수익금의 지원) ① 법 제14조의6제4항에 따라 수익금을 지원할 때에는 계약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분할하고 매 기간의 수익금을 산정하여 해당 기간의 마지막 날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금을 지원할 때에는 특정 품목의 배출자에게 금액, 산정 근거, 지원 시기 등 지원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의6제3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수익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제2항의 지원계획에 그 변동내역과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의8(대행계약 등의 내용 공개) 법 제14조의6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약 내용을

공개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제15조의6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일을 말한다)로부터 3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 및 입찰 공고
2. 계약 체결의 현황
3. 그 밖에 개찰 결과, 대가지급 현황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의3제2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내연기관 청소차량 배출가스로부터 환경미화원의 인체영향을 줄이기 위해 수직형으로 배기관을 설치할 것

제18조제4항제1호 본문 중 “(전년도 1년간”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매 1년간의”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5호 중 “폐유독물질”을 “폐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2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의료폐기물의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인계·인수에 관한 구체적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같다) 또는 석탄재(수

입석탄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같다), 석탄재(수입석탄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또는 리튬이차전지(배터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6조 중 “25킬로그램 미만”을 “200킬로그램 미만(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50킬로그램 미만)”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나목 중 “경우(최초로 제출한 경우만 교육을 받는다)”를 “경우(최초로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제66조제3항제3호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같은 호 마목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포장재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의2까지에”로, “포장재 및 1회용 봉투·쇼핑백만 해당한다)”을 “포장재, 1회용 봉투·쇼핑백 및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류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1회용 컵

제66조제6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어업·양식업용 폐합성수지

12. 제3항제3호에 따른 폐포장재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마목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

외품 포장재

별표 4 제1호 09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09 폐유해화학물질

09-01-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09-02-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09-03-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고시된 용도로 사용된 경우로 한정하되,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09-04-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09-05-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생화학무기법」에서 폐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물질은 제외한다)

09-06-00 연구·검사용 폐시약

09-07-00 그 밖의 폐유해화학물질

별표 4 제2호 51-27-03란 다음에 51-27-0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27-04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별표3에 따른 의료기관 및 시험

· 검사기관 등에서 발생하고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일회용기저귀를 말한다. 다만, 같은 표 제14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일회용기저귀는 제외한다).

별표 4의3제2호 51-17-25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2”를 “R-4-2, R-4-4, R-4-7”로 하고, 같은 호 51-24-00 및 51-25-00의 재활용 유형란 중 “R-1-1”을 각각 “R-1, R-2”로 하며, 같은 호 51-26-00의 재활용 유형란 중 “R-3-4”를 “R-1, R-2, R-3-4”로 하고, 같은 호 51-36-01 및 51-36-02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7”을 각각 “R-4-2, R-4-3, R-4-4, R-4-7”로 한다.

별표 4의3제3호 91-17-01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2”를 “R-4-2, R-4-4, R-4-7”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영 제8조의 4 각 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별표 5 제4호가목3)에 라)부터 바)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폐유해화학물질을 수집·운반차량에서 저장시설로 배관을 통해 이송하는 경우 운송차량 측 유출배관에 긴급 차단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마) 폐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수집·운반차량은 사고 시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약품 또는 장비, 응급조치 장비와 탑승자를 위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바) 폐유해화학물질은 해당 물질이 유출되거나 누출되었을 때 상호반응을 일으켜 화재, 유독가스 생성, 발열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과 함께 운반해서는 아니 된다.

별표 5 제4호가목 7) 및 8)을 각각 10) 및 11)로 하고, 같은 목에 7)부터 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폐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지정폐기물을 운반하는 용기는 쉽게 파손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해야 하며, 그 입구로부터 수납된 물질이 새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한다.

8)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폐유해화학물질 운반 용기에 대한 수납은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복수의 폐쇄장치가 연속하여 설치되어 있는 운반용기

에 물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용기본체에 가까운 폐쇄
장치를 먼저 폐쇄할 것

나)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운
반용기에 수납 또는 배출할 때에는 당해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다)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고체의 물질이 액상으로 되었을
때에는 당해 물질이 새지 아니하는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9) 보관시설 및 설비와 탱크 간에 폐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
는 폐기물을 이송하거나 이입할 때에는 물질의 누출을 방
지하고 누출된 물질로 인한 재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5 제4호나목9)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표지판의 보기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폐기물의 종류:	②보관가능용량: 톤
③관리책임자:	④보관기간: ~ (일간)
⑤취급 시 주의사항 ☐ 보관 시: ☐ 운반 시: ☐ 처리 시:	
※ 화재·폭발 등 위험성이 있는 폐유해화학물질 취급 중 흡연하거나 음식물, 음료 등을 섭취하지 말 것	
⑥운반(처리)예정장소:	

별표 5 제4호나목10) 및 13)을 각각 13) 및 14)로 하고, 같은 목에 1

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폐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종류가 다른 폐유해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유해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나) 폐유해화학물질을 저장탱크에 보관할 때에는 혼합 전 물질의 위험성을 확인해야 한다.

다) 폐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유효하게 배출이 되는 건축물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보관시설에는 채광 및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가 확보되는 건축물에는 채광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자연발화성 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5 제4호다목1)라)(2) 중 “폐유독물질”을 “폐유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라)에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2)거) 중 “폐유독물질”을 “폐유해화학물질”로 한다.

(3) 인화성을 지닌 폐유해화학물질은 그 물질이 반응하지 않는 액체나 공기 분위기에서 취급해야 한다.

(4) 폐유해화학물질을 계량하고 공정에 투입할 때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환기를 해야 한다.

별표 5 제5호마목2)가) 중 “25킬로그램”을 “200킬로그램”으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폐식용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중 바이오디젤(BD100), 바이오디젤연료유(BD20) 또는 바이오중유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바이오디젤(BD100), 바이오디젤연료유(BD20) 또는 바이오중유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7 제5호가목1)가)(1)(다) 중 “폐김발장 또는 석탄재”를 “폐김발장, 석탄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또는 리튬이차전지(배터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정)”로 하고, 같은 호 나목1)가)(1)(가) 단서 중 “폐촉매”를 “폐촉매, 리튬이차전지(배터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정)”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11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한 장비·사무실 등을 갖춘 자는 비고 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의4 각 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한 장비·사무실 등을 갖춘 자로 본다.

12. 영 제8조의4 각 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별표 9 제1호나목1)바) 단서 중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처분하는 시설”을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소각시설”로 하고, 같은 1) 자) 본문 중 “시간당”을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소각시설로서 시간당”으로 하고, 같은 1) 차)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도서지역에 설치하는”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나목2)가)(1) 본문 중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외의 시설”을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소각시설”로 하며, 같은 가) (2) 전단 중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외의 시설”을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도서지역에 설

치하는 소각시설”로 하고, (2) 후단 중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외의 시설로서”을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소각시설로서”로 한다.

별표 9 제1호나목2)가) (3) 본문 중 “이하(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를 “이하”로 한다.

별표 9 제1호나목2) 나)에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폐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지정폐기물의 소각시설 배관설비(저장 또는 보관시설에서 소각시설로 연결된 배관만 적용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해야 한다.

(가) 배관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나) 배관의 외부가 부식되어 폭발·화재 또는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유해화학물질의 종류·온도·농도 등에 따라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 배관의 덮개·플랜지·밸브 및 콕의 접합부는 폐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되도록 해

야 한다.

(라) 배관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인드 등 적절한 방법으로 마감처리를 해야 한다.

(마)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폭발성 폐유해화학물질을 연소실로 이송하는 배관설비는 긴급 시 물질이 역류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바) 배관내의 폐유해화학물질의 종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폐유해화학물질이 혼합되어 처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폐유해화학물질의 보관시설은 내부물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계, 습도계, 액위계, 유량계, 압력계 등의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9 제1호나목2) 다)(3) 진단 및 (4) 본문 중 “시간당”을 각각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소각시설로서 시간당”으로 한다.

별표 10 제1호 중 정기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기검사	공통사항	○연소상태의 적절성 유지 여부 ○소방장비 설치 및 관리실태 ○보조연소장치의 작동상태 ○배기가스온도 적절 여부 ○바닥재 강열감량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	------	---

	○연소실 가스체류시간 ○설치검사 당시와 같은 설비·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고온소각시설(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에 한정)	○배관의 재료, 강도, 두께 ○배관의 마감처리 상태 ○역류 차단시설

별표 10의2 제1호 비고 제2호 중 “제2호가목 또는 나목”을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마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중 “제2호가목 및 다목”을 “제2호가목, 다목 또는 마목”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비고 제1호나목 중 “제2호가목 및 다목”을 “제2호가목, 다목 및 마목”으로 한다.

마. 검사대상시설이 열분해시설인 경우

구분	시설·장비 요건
1) 시설	가) 10제곱미터 이상의 실험실(후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10제곱미터 이상의 장비·시료 보관실 다) 사무실
2) 장비	가) 현장검사용 장비 (1) 온도계 및 온도기록계 (2) 가스(산소, 일산화탄소) 측정기 나) 실험실용 장비 (1) 건조기 (2) 회화로

별표 11 제2호가목1)가)(6)단서 중 “다만”을 “다만,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도서지역에 설치하는”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1)나)(1)(가) 본문 및 (나) 중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외의 시설”을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도서지

역에 설치하는 소각시설”로 하며, 같은 (1) (다) 본문 중 “10퍼센트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15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1)나)(3)(나) 중 “시간당”을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소각시설로서 시간당”으로 하며, 같은 (3) (다) 중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을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소각시설”로 한다.

별표 21 제1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법 제25조제1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어느 하나의 처분권자에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른 처분권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처분할 수 없다.

별표 21 제2호다목16)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25조제9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하여 법 제1

3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 중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1 제2호라목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또는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나)를 적용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1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 중 “날짜별로 작성하되”를 “ 날짜별로 매월 말일까지 작성하고”로 한다.

별지 제37호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 중 “날짜별로 적고”를 “날짜별로 매월 말일까지 적고”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 제2항제1호다목, 제18조의2제1항제5호, 별표 4 제1호 09, 별표 5

제4호가목3) 라)부터 바)·제4호가목 7)부터 9)·제4호나목9)라)·제4호나목10)·제4호다목1)라)(2)부터 (4)·제4호다목2)거), 별표 9 제1호나목2)나)의 (5)와 (6), 별표 10 제1호, 별지 제14호의4 서식 ⑮란과 작성방법란 제8호의 개정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1호나목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각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소각시설 설치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제39조제3항제4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 별표 5 제5호마목, 별표 9 제1호나목 및 별표 1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폐유해화학물질 수집·운반차량에 대한 적용례) 별표 5 제4호가목3)라)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중 폐유해화학물질을 배관을 통해 저장시설로 이송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5 제2호가목5) 및 별표7 비고11·12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재활용환경성평가

[] 신청서
[] 변경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E-mail
신청 내용	대상 폐기물	종류
	재활용 장소	소재지
	재활용 유형	양(톤)
	기타	면적(제곱미터)

[] 제14조의4제1항
[] 제14조의4제3항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 따라

[] 신청
[] 변경신청

위와 같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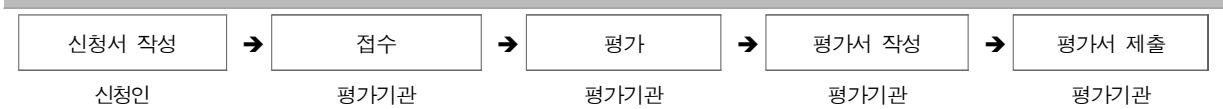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의 경우 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의 재활용 계획서 (1)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유형 (2) 재활용 공정도 및 재활용 공정별 물질수지(物質收支) 분석 자료 (3) 재활용에 따른 주변 지역의 오염 예방·저감 계획(재활용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재활용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실적 또는 유사 사례(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 재활용 공정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한 환경 유해성 분석 자료 다. 재활용 제품의 생산 시설 등 재활용 공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생산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실험시설 등의 대체시설을 말합니다) 현황 라. 재활용 대상 부지에 대한 지형·지질 등의 현황 자료[폐기물 등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용(이하 "매체접촉형 재활용"이라 한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재활용 대상 부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변화 모니터링 대상 항목·방법·주기 및 기간 등이 포함된 사후관리 계획(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재활용 제품 등의 시제품(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동일 폐기물·공정 및 재활용 유형으로 각각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 (1)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사업자 목록 (2)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사업자별 현황 자료 2. 재활용환경성평가 변경신청의 경우 가.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원본 나. 제14조의6제4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 원본(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변경사항이 반영된 제1호에 따른 서류(서류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	---

작성방법

1.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신청인이 동일 폐기물·공정 및 재활용 유형으로 각각 재활용하려는 경우, 신청인란은 공동 재활용의 대표자의 성명, 상호 등을 적습니다.
2.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신청인이 동일 폐기물·공정 및 재활용 유형으로 각각 재활용하려는 경우, 신청내용란은 재활용환경성평가 공동 신청인 전체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적습니다.
3. 아래 신청서 사전확인목록에 따라 각 단계별로 평가 대상여부, 구비서류 준비 여부 등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사전확인목록

☐ 신청서 사전확인목록은 총 3단계로 구분되어있습니다.

- 1단계 :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여부

- 2단계 :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 포함 내용

- 3단계 :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 구비서류

☐ 아래 해당부분에 체크하시고 필요사항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여부

폐기물 종류(폐기물 분류번호)1)	
재활용 유형2)	

- 1) 인허가증(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등)에 표기되어 있는 폐기물 종류 및 분류번호 작성
-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항목	예	아니오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재활용 금지·제한 폐기물에 해당하는가?		
(2)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지 않고 재활용 할 수 있는가?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을 확인하여 재활용 대상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인가?		
(4) 매체접촉형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규모(12만톤 또는 3만제곱미터) 이상인가?		

※ 위 항목들 모두 ‘아니오’에 해당할 시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여부로 확인되었으므로, 신청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2부서류를 준비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항목		예	아니오
①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유형			
비매체접촉형	①-1 재활용 원리 및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가?		
	①-2 다음은 재활용제품 등의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다음 중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체크하시오(중복선택 가능)	☐ 폐기물 재활용 기준 ☐ 재활용제품의 판매처 및 납품업체 정보 ☐ 납품계약서 ☐ 기타 :	
매체접촉형	①-3 대상폐기물 또는 재활용 대상물질의 발생 및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		
	①-4 대상폐기물 또는 재활용 대상물질의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		
	①-5 재활용 대상부지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		
② 재활용 기술에 대해 구체적(원리, 공정, 최적조건, 관리기준 등) 기술			
②-1 재활용 공정의 유입, 유출, 생성, 소모까지 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			
②-2 유해성물질 기준 평가에서 분석결과를 물질수지에 반영하여 결과 해석한 자료가 있는가?			
③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한 재활용 적정성(분석자료)			
③-1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유해성 분석자료(공인 분석기관 시험성적서)가 있는가?			
③-2 재활용제품의 유해성 분석자료(공인 분석기관 시험성적서)가 있는가?			
③-3 공정상 발생하는 폐기물의 유해성 분석자료(공인 분석기관 시험성적서)가 있는가?			
④ 재활용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실적 또는 유사사례에 대한 자료가 있는가?			
⑤ 재활용으로 인한 오염 가능성(분석자료)			
매체접촉형만	⑤-1 재활용 대상부지에 대한 지형·지질 등의 현황자료가 있는가?		
	⑤-2 재활용 대상부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변화 모니터링 대상 항목·방법·주기 및 기간 등이 포함된 사후관리 계획이 있는가?		
⑥ 재활용 공정 및 제품의 사용 시 적정성(분석자료)			
⑥-1 현재 재활용 공정 물질수지를 반영한 시설 현황자료가 있는가?			
⑥-2 재활용 전 과정의 세부 공정별 설명(도면, 사진 등)자료가 있는가?			
⑥-3 현재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재활용 제품을 제조할 수 있고 전 공정을 파악할 수 있는 유사 공정 또는 대체공정에 대한 자료가 있는가?			
⑥-4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재활용 제품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는가?			

비매체접촉형		
구분	구비서류 목록	Check
공통사항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제품인증서	☐
	인허가증 사본	☐
	토지전용, 사용승낙서	☐
대상폐기물	폐기물배출자신고서	☐
	배출업소 공장등록증	☐
	시험성적서(재활용물질)	☐
	시험성적서	☐
	관로, 차량 등 운반계획	☐
	재활용량 처리계획 계약서, 협약서 등	☐
재활용 공정	재활용 원리 기술개발, 유사재활용 자료	☐
	현장조사 시료채취 가능여부(담당자, 연락처)	☐
	재활용 공정도 및 물질수지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
	사업장 부지 토지이용계획서	☐
재활용 제품	제품규격 관련법령, 규격, 기준	☐
	구성성분 시험성적서	☐
	유해성 시험성적서	☐
	제품성능 시험성적서	☐
	실험방법을 포함한 사용시설 관련 자료	☐
	제품의 수요·공급 계획서	☐
	제품의 경제성 분석 자료	☐
	유사(재활용) 제품 등의 규격(제품 규격이 없는 경우만 해당)	☐
	배출공정 MSDS 자료	☐

매체접촉형		
구분	구비서류 목록	Check
공통사항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제품인증서	☐
	인허가증 사본	☐
	토지전용, 사용승낙서	☐
대상폐기물	폐기물배출자신고서	☐
	배출업소 공장등록증	☐
	시험성적서(재활용물질)	☐
	시험성적서	☐
	관로, 차량 등 운반계획	☐
	재활용량 처리계획 계약서, 협약서 등	☐
재활용 공정	재활용 원리 기술개발, 유사재 활용 자료	☐
	현장조사 시료채취 가능여부(담당자, 연락처)	☐
	재활용 공정도 및 물질수지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
	사업장 부지 토지이용계획서	☐
재활용 제품	제품규격 관련법령, 규격, 기준	☐
	구성성분 시험성적서	☐
	유해성 시험성적서	☐
	제품성능 시험성적서	☐
	실험방법을 포함한 사용시설 관련 자료	☐
	제품의 수요·공급 계획서	☐
	제품의 경제성 분석 자료	☐
	유사(재활용) 제품 등의 규격(제품 규격이 없는 경우만 해당)	☐
	배출공정 MSDS 자료	☐
모델링 평가	주변지역 포함한 부지도면(경계 확인 가능)	☐
	관측정 등 인허가 가능여부(관련 법령자료 포함)	☐
	주상도 및 지반안정성 등 설계자료	☐
	수문·유역 등 조사자료	☐
	모델링 필수인자 기초자료	☐
	인근 측정망 자료	☐
	토양, 지표수, 지하수 등 배경농도 시험성적서	☐
	모델링 시기별 조사계획(시험정 규격, 수량, 횟수 등) 및 근거자료	☐
현장 적용성	현장적용성시험 신청서(평가기관 제출용)	☐
	현장적용성시험 검토결과	☐
	현장조사 및 설치장소 관련 서류	☐
	지질, 토지이용계획서	☐
	수질, 토양, 식물생장 시험성적서	☐
	지반안정성 확인을 위한 침하, 변형 등 구조설계자료	☐
	재활용 관련 설계·시공계획	☐
	현장 적용성 시험 모니터링 수행계획서(조사기간, 조사항목 등)	☐
사후관리	사후관리계획서(조사항목, 주기, 지점, 방법, 계획, 결과 포함)	☐

계약금액 조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의견제출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신 청 사 유 ※ 해당 사항 에 (V) 표 시	()	대행계약을 체결한 특정품목의 처리비용(계약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이 입찰일 당시의 처리비용보다 100분의30 이상 증가				
	()	대행계약을 체결한 특정품목의 매각단가(계약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가 입찰일 당시의 매각단가보다 100분의30 이상 감소				
	()	대행계약을 체결한 특정품목의 물량(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이 입찰일 당시의 물량보다 100분의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				
	()	대행계약의 영업 구역 내 세대 수가 입찰일 당시의 세대 수보다 100분의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				
	()	그밖에 재 활용시장의 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 청 내 용	계약 금액			신청 금액		
	원/세대			원/세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6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신청사유 관련 증빙 자료 (처리비용, 매각단가, 물량 및 세대수 정보 등)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확인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3쪽 중 제1쪽)

① 관리번호		② 작성일(제공일)			
제 공 자	③ 상호(명칭)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성명(대표자)	⑥ 성명(담당자)			
	⑦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폐 기 물 정 보	⑧ 폐기물	폐기물 종류 []단일 폐기물 []혼합 폐기물	폐기물 분류번호 (- -)		
	⑨ 포장형태	[]용기(재질:) []통백 []차량직접적재 []기타()			
	⑩ 발생량(톤/년)				
	⑪ 제조공정				
안정성 · 반응성	⑫ 유해특성	항목	조사 방법	유해특성 정보	비고
		폭발성	[]분석 []자료()		
		인화성	[]분석 []자료()		
		자연발화성	[]분석 []자료()		
		금수성	[]분석 []자료()		
		산화성	[]분석 []자료()		
		부식성	[]분석 []자료()		
		기타(독성 등)	[]분석 []자료()		
⑬ 물리 적 · 화학적 성질	성상 및 색		악취		
	수분(%)		비중		
	수소이온농도(pH)		끓는점(℃)		
	녹는점(℃)		시간에 따른 폐기물의 성상 등의 변화		
	기타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제3쪽 중 제2쪽)

	항목	조사 방법	주요 성분	비고
성분정보	⑭ 유해물질 용출독성 및 함량	[]분석 []자료()		
	⑮ 유해화학물질 포함 여부	[]분석 []자료()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물질	
	⑯ 수분 등과 접촉 시 화 재·폭발 또는 독성가스 발생 우려 성분	[]분석 []자료()		
⑰ 취급 시 주의사항	안전대책	보호구	[]마스크 []장갑 []보호안경 []기타()	
	저장 및 보관방법			
⑱ 사고 발생시 방제 등 조치방법	이상조치	응급조치		
		누설대책		
		화재시의 조치		
	약품, 장비 및 방제요령			
⑲ 특별 주의사항				
⑳ 그 외 의 정보				

작성방법

1. ①란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제공사)가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를 관리하는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은 배출자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일(또는 전문기관의 작성일) 및 수탁자에게 제공한 날짜를 적습니다.
3. ⑧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4. ⑨란은 폐기물을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차량에 적재하는 당시 폐기물의 포장형태를 적습니다.
5. ⑪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시부터 제품의 출하 시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주요 원료·부원료·첨가물 및 폐기물의 발생공정과 장소 등에 대해 가능한 한 자세한 정보를 적습니다.
6. ⑫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유해특성에 대한 조사방법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분석결과 또는 자료(근거자료 기재)를 선택한 후 조사방법에 따른 유해특성 정보를 작성(유해특성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표기)하며, 기타 항목은 명시된 유해특성 외에 독성 등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는 경우 비교란에 해당내용을 적습니다.
7. ⑬란은 분석결과 및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폐기물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을 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이 중 시간에 따른 폐기물 성상 등의 변화란에는 폐기물의 성상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부패나 휘발성 화학반응 등에 의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그 내용과 원인을 적습니다.
8. ⑭란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변경확인)시 분석한 결과 등을 참고하여 폐기물의 용출독성 및 그 성분을 작성하고, 유해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량에 대한 조사방법은 공인된 시험방법에 따른 분석결과 또는 자료(근거자료 기재)를 선택한 후 조사방법에 따른 폐기물의 함량 정보를 적습니다. 분석결과 및 자료가 없어 용출독성 또는 함량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교란에 해당내용을 적습니다.
9. ⑮란은 폐기물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다고 예상되는 경우 분석결과 또는 자료(근거자료 기재)를 선택한 후 조사방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분석결과 및 자료가 없거나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교란에 해당내용을 적습니다.
10. ⑯란은 폐기물이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성분 등을 포함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성분에 대한 조사방법은 분석결과 또는 자료(근거자료 기재)를 선택한 후 조사방법에 따른 성분정보를 작성(해당 성분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표기)하며, 분석결과와 자료가 없어 성분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교란에 해당내용을 적습니다.
11. ⑰란은 폐기물을 취급하는 경우 보호구(마스크 등)를 착용하는 것과 같은 보호조치를 작성하고, 저장 및 보관방법란은 온도, 습도 등의 보관조건 및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12. ⑱란은 응급조치란에는 폐기물에 의해 취급자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행해야 할 조치에 대해 작성하고, 누설대책란은 폐기물을 운반중이나 보관 중에 누설했을 경우 대처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화재시의 조치란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화방법, 소화제 등 대처방법을 작성하고, 약품·장비 및 방제요령란은 사고발생 시 방제약품, 방제장비 등 방제방법을 적습니다.
13. ⑲란은 파쇄금지, 다른 폐기물과 혼합금지, 증기 또는 분진 발생 방지, 피해야 할 조건, 피해야 할 물질, 분해 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등 폐기물을 보관·취급하는데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습니다.
14. ⑳란은 빈용기의 처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요구사항, 기타 특이사항 등 폐기물의 정보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기타 정보를 적습니다.

※ 제1쪽 상단의 “확인필”은 스스로 작성하는 자의 경우 대표자 직인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직인을 찍습니다.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일반유형)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 (단위: 톤, g, kw, m³, kcal 중 선택)

연월일	① 수탁내용		② 폐기물 재활용 내용		③ 수탁 폐기물 보관량	④ 잔재폐기물 처리내용					결재
	위탁 업소명	수탁량	재활용 방법	폐기물 재활용량		폐기물 종류	발생량	처리자	처리 방법	처리량	

(제2쪽)

연 월 일	⑤ 재 활용제품 (중간가공폐기물을 포함한다)		⑥ 재 활용제품(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공급 및 보관 내용								결재
			공급처				공급량	잉여량 또는 감모량	잉여량 또는 감모량 발생 사유	보관량	
	종류	생산량	상호 (대표자)	업종	소재지	사용 용도					

297mm×210mm[백상지(80g/㎡)]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R-7유형)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 (단위: 톤, g, kw, m³, kcal 중 선택)

연월일	① 수탁내용		② 폐기물 재활용 내용		③ 수탁 폐기물 보관량	④ 잔재폐기물 처리내용					결재
	위탁 업소명	수탁량	재활용 방법	폐기물 재활용량		폐기물 종류	발생량	처리자	처리 방법	처리량	

297mm×210mm[백상지(80g/㎡)]

(제4쪽)

연월일	⑤ 중간가공 폐기물		⑥ 중간가공폐기물의 공급 및 보관 내용									결재
			공급처					공급량	잉여량 또는 감모량	잉여량 또는 감모량 발생 사유	보관량	
	종류	생산량	상호 (대표자)	업종	소재지	사용 용도	최종 재활용 대상부지					

297mm×210mm[백상지(80g/㎡)]

작성방법

1. 폐기물종류는 별표 4의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2. 단위는 톤, g, kw, m³, kcal 중에서 선택하되 액체생태인 폐기물의 양이 부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하여 적고, 수탁량 및 재활용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3. ①란부터 ③란까지는 폐기물을 수탁 처리 또는 재활용하거나 잔재폐기물이 발생 또는 처리될 때마다 날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①란의 위탁업소명란에는 폐기물 배출업체명을 적습니다.
5. ②란의 재활용방법란은 폐기물재활용업자의 경우는 별표 4의2에 따른 방법을, 폐기물처리신고자의 경우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을 적습니다.
6. ③란의 수탁폐기물 보관량란은 수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남은 보관량을 적습니다.
7. ④란의 잔재폐기물 처리 내용란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자, 처리방법, 처리량을 적습니다.
8. ⑤란의 재활용제품란의 종류는 고무분말, 톱밥 등 재활용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생산한 제품이 에너지인 경우에는 증기, 온수 등 에너지의 종류) 또는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해 가공한 것(성토재, 목재칩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며, R-7 유형(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중간가공 폐기물의 재활용토사(재활용 대상 폐기물)와 일반토사(건설폐기물) 혼합 비율을 적습니다.
9. ⑥란의 공급처란의 업종은 중간가공 폐기물을 공급한 경우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공급처의 주된 업종을 적습니다.
10. ⑥란의 잉여량 또는 감모량은 재활용제품의 특성, 보관 및 운송과정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 대장의 보관량과 현장의 보관량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적습니다.
11. ⑥란의 최종 재활용 대상부지에는 중간가공 폐기물을 공급한 자의 경우에는 공급을 받는 자가 재활용할 대상 부지를 적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공급받는 자의 경우 재활용할 대상 부지를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① (생 략) ② 영 제7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4의2. (생 략) <u><신 설></u> 5. (생 략) ③ ~ ⑥ (생 략)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제66조제6항제11호에 따른 어업·양식업용 폐합성수지를 수집·운반하는 자 5.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영 제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10의4. (생 략) <u><신 설></u>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 ----- ----- ----- ----- ----- -----. 1. ~ 10의4. (현행과 같음) 10의5. <u>별표7 제5호가목2)라)(1)에 따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 등 재사용 제품의 제조에 재활용하는 경</u>

11. (생 략)

제15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 8. (생 략)

<신 설>

②·③ (생 략)

오

11.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 ① -----

-----.

1. ~ 8. (현행과 같음)

9. 어업·양식업용 폐합성수지
(어업·양식업 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자 및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2의 표제4호에 따른 어망 및 같은표 제5호에 따른 로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4(원가계산 기준) ① 법 제1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이하 “대행용역 원가계산”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 5. (생 략)

② (생 략)

제15조의5(대행계약의 해지) (생 략)

<신 설>

<신 설>

제15조의4(원가계산 기준) ① --

----- 대행계약(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은 제외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의5(대행계약의 해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 제14조의6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의6(계약금액의 조정)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대행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조정계획을 해당 계약을 체결한 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을 체결한 특정 품목의 처리비용(계약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리비용을 합산한 비용을 말한다)이 입찰일(종전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일로 한다. 이하 같다) 당시의 처리비용보다 100분의30 이상 증가한 경우

2. 대행계약을 체결한 특정 품목의 매각단가(계약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각단가를 합산한 단가를 말한다)가 입찰일 당시의 매각단가보다 100분의30 이상 감소한 경우

3. 대행계약을 체결한 특정 품목의 물량(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말한다)이 입찰일 당시의 물량보다 100분의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4. 대행계약의 영업 구역 내 세대 수가 입찰일 당시의 세대

수보다 100분의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5. 그 밖에 재활용시장의 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
요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 특
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정계획을 통
지받은 대행자는 그 조정계획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
정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
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
한 검토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대행자는 재활용시장의 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
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
호의14서식의 계약금액조정신

<신 설>

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계약 품목의 처리비용 및 매각단가의 변동상황,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금액의 산정 및 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의7(대행계약 수익금의 지원) ① 법 제14조의6제4항에 따라 수익금을 지원할 때에는 계약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분할하고 매 기간의 수익금을 산정하여 해당 기간의 마지막 날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금을 지원할 때에는 특정 품목의 배출자

<신 설>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생

에게 금액, 산정 근거, 지원 시기 등 지원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의6제3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수익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제2항의 지원계획에 그 변동내역과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의8(대행계약 등의 내용 공개) 법 제14조의6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약 내용을 공개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제15조의6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일을 말한다)로부터 3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 및 입찰 공고
2. 계약 체결의 현황
3. 그 밖에 개찰 결과, 대가지급 현황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현행

략)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생략)

가. ~ 나. (생략)

<신설>

2.·3. (생략)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하기 전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내연기관 청소차량 배출
가스로부터 환경미화원의 인
체영향을 줄이기 위해 수직형
으로 배기관을 설치할 것

2.·3.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해당한다),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및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50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 9. (생략)

⑤ (생략)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①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

1. -----
-----(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매 1년간의 -----
-----.

-----.

2. ~ 9.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① -----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 4. (생략)

5. 폐유독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6. ~ 9. (생략)

② ~ ⑨ (생략)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① ~ ③ (생략)

<신설>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① 법 제25조제9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1일 재활용량의 60일분 보관량 이하, 60일 이내. 다만, 폐기물 재활

-----.

1. ~ 4. (현행과 같음)

5. 폐유해화학물질-----
--

6. ~ 9.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의료폐기물의 무선주파수인식 방법을 이용한 인계·인수에 관한 구체적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

-----.

용업자가 폐목재, 폐촉매,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석탄재(수입석탄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1일 재활용량의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로 한다.

가.·나. (생략)

4. ~ 7. (생략)

② (생략)

제36조(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 법 제2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이란 시간당 폐기물 소각 능력이 25킬로그램 미만인 폐기물 소각 시설을 말한다.

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생략)

----- 같다), 석탄재(수입석탄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또는 리튬이차전지(배터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정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

4.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 -----

----- 200킬로그램 미만(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소각 시설의 경우에는 50킬로그램 미만)-----.

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 (현행과 같음)

1. (생략)

가. (생략)

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최
초로 제출한 경우만 교육
을 받는다)

다. ~ 마. (생략)

2.3. (생략)

② ~ ⑤ (생략)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①

· ② (생략)

③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
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
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2. (생략)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
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
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쇼핑백만 해
당한다)

1. (현행과 같음)

가. (생략)

나. -----
----- 경우(최
초로 제출한 경우를 말한
다)

다. ~ 마. (현행과 같음)

2.3.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8조제1호(같은 호 마
목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
품 포장재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의2까지에 -----
----- 포장재,
1회용 봉투·쇼핑백 및 합성
수지 재질의 필름류만 해당한

4. (생략) <u><신설></u> ④·⑤ (생략) ⑥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 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 10. (생략) <u><신설></u> <u><신설></u>	<u>다]</u> 4. (현행과 같음) 5. <u>1회용 컵</u>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u>어업·양식업용 폐합성수지</u> 12. <u>제3항제3호에 따른 폐포장 재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마목에 따른 의약 품 및 의약외품 포장재</u>
---	--